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 10. 1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규식

1. 제 출 자: 성동구청장

2. 제안이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2조의2)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조문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0. 9. 1. ~ 9.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환경 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존속기간을 5년 연장 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O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2항 및 제3항1)에 위배됨이 없으며,
- 안 제3조의2 제2항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²⁾에 따라 성비 준수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12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의 준용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 하는 것입니다.

¹⁾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u>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u> <u>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u>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 본 기금은 성동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후생복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본 안건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법령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 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u>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 1. 직종 직급 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0. 11. 20.] 제21조